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2일(금),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 교육부 설문(20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별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사무관	백봉현 (044-203-6481)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9월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과정에 교육청 의견참고가 의무화됩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




- 교육지원청(교육활동 조사 수사지원팀) ▶ 교육청 ▶ 조사·수사기관
-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의견 제공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여 조사·수사**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지침 현장 안내 예정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시 이렇게 조치됩니다!

	조사 <small>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small>	수사 <small>경찰·검찰</small>	의견제출 <small>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공무원)</small>
주체			
신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확인 • 아동학대 관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받은 신고내용 확인 • 조사·수사일정 확인
출동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과 협조 • 관련자 등 추가조사, 면담 • 진술 녹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협조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 증거수집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8080;">사안 조사 및 확인</p> <p><small>(교육활동 조사 수사지원팀)</small></p> <p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adding: 2px;">▶ 교육청에 의견 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수사 당국과 협조 •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판단 • 사안에 대한 의견 작성 ▶ 교육청에 상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판단 <li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시도교육감 의견서 참고 <small>※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small> • 피해아동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현장종결, 입건전 조사종결) 또는 수사 계속 <li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시도교육감 의견서 참고 <small>※경찰청, 수사지침</small>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8080;">교육청</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8080;">교육청</p> <p>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 시작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사항을 공유 받은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 •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 검찰 수사 조사 <li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시도교육감 의견서 참고 <small>※법무부, 검찰 지침</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수사 조사 시 다시 의견제출 